- 2022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 12. 1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89(236)	153(132)	141(57)	95(47)
비 상 기 획 관	28(4)	9(4)	11(0)	8(0)
민생사법경찰단	22(7)	10(6)	9(0)	3(1)
행 정 국	48(69)	23(44)	13(6)	12(19)
재 무 국	46(36)	13(12)	15(17)	18(7)
평 생 교 육 국	59(37)	24(22)	20(7)	15(8)
인 재 개 발 원	25(4)	10(2)	11(2)	4(0)
감 사 위 원 회	32(34)	14(18)	13(8)	5(8)
시 민 감 사 옴부즈만위원회	33(15)	10(11)	8(4)	15(0)
자치경찰위원회	28(15)	14(5)	10(10)	4(0)
서 울 특 별 시 자원봉사센터	30(3)	11(2)	15(1)	4(0)
서울장학재단	22(5)	10(2)	8(1)	4(2)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진흥원	16(7)	5(4)	8(1)	3(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 그 상태를 정확히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부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2. 감사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제315회 정례회 : '22.11. 1.(화)~12.22.(목) 〈5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9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비상기획관 ○ 민생사법경찰단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인재개발원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국민의 힘	김 원 태	•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 행 정 5 급 김 석 기 • 전 문 위 원 김 정 덕 • 행 정 6 급 류 홍 섭 •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입법조사관 정 찬 일 •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입법조사관 손 정 욱 • 행 정 7 급 박 소 현 • 관리운영7급 김 경 선 • 관리운영7급 강 태 영 • 정책지원관 이 슬 기 • 정책지원관 윤 희 랑 • 정책지원관 윤 주 이 • 입법지원관 정 주 현 • 입법지원관 이 정 수 • 속기 및 녹취요원(3명)
부위원장	국민의 힘	송 경 택	
〃	더불어민주당	박 유 진	
위 원	국민의 힘	구 미 경	
〃	〃	박 환 희	
〃	〃	서 호 연	
〃	〃	옥 재 은	
〃	더불어민주당	박 수 빈	
〃	〃	송 재 혁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2(수)	10:00	• 재무국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3(목)	10:00	자료정리		
11. 4(금)	10:00	• 자원봉사센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 5(토) ~11. 6(일)		휴 감		
11. 7(월)	10:00	• 비상기획관 • 자치경찰위원회		
11. 8(화)	10:00	•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인재개발원		
11. 9(수)	10:00	• 행정국		
11. 10(목)	10:00	자료정리		
11. 11(금)	10:00	• 평생교육국		
11. 12(토) ~11. 13(일)		휴 감		
11. 14(월)	10:00	• 민생사법경찰단 • 감사위원회		
11. 15(화)	10:00	• 종합감사 미실시 ※ 운영위원회 감사		

6.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태극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민생사법 경 찰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디지털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지정 지명분야 관련 사항 -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거래 관련 분야 - 불법 대부업 관련 분야 -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 - 상표권 침해·원산지 표시(공산품) 위반 분야 - 부동산 불법행위 분야 - 식품·원산지 표시(농·수산물) 위반 분야 - 공중위생·사회복지 분야 - 의료·정신시설·의약·화장품·의료기기 분야 - 청소년 보호 관련 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분야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사환경, 청소용역 및 폐기물 재활용,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본관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기획에 관한 사항 ● 청사투어 운영 및 프로그램 발굴, 안내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 본관 직원식당· 간담회장 운영, 자판기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용차량 관리·운영(운전원, 차량 등) 및 업무택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뜨락, 회의실(후생동강당),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청내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 공관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인터넷전화, 시설관리망, 법인휴대전화 등 유무선 통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시무식·직원조례 개최,시장단 이·취임식, 신년인사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임차청사 해소·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및 사무공간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시 자체 행사 조정 및 국경일 등 국가 주요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광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당직, 보안, 청사방호, 공공안전관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관리, 역량평가, 대우공무원 선발·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 제1·2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복무관리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및 상시기록평가, 실적가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수 및 수당, 공무원 연금,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상훈·표창, 정년·명예 퇴임식 등에 관한 사항 ● 개방형 직위 인사관리(선발),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직 · 공공안전관 단체 · 입금교섭 및 노동조합, 인사 · 복무 ·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미래서울 아침특강 운영, 장·단기 국외훈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부속의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장·단기 국내위탁교육,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퇴직준비교육 운영, 직장교육 운영, 직장 외국어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습동아리 운영, 국내 배낭연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계획 수립, 선택적복지제도, 후생복지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 ● 3개 연수원 및 콘도(민간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책임보험 운영, 시청매점, 직원상조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검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건강DB구축 및 난임직원 지원, 힐링센터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구·동 행정 지원, 현장시장실 운영, 구청장 면담, 시·구정 간담회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도 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구청장회의, 행정1부시장 산하 간부회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예산 총괄,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선거사무 관리 총괄,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이용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서울시 봉사상,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과거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시간은행 운영,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입주단체 관리, 서울혁신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진단 및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서울시 · 권역별 NPO지원센터, NPO 입주 · 협업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유서울 기본계획 수립, 공유 촉진 사업 지원 및 공유허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민관 사회공헌 협력사업 연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및 비영리법인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시·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의회 운영, 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추진,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기금운용 및 대외협력기금사업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지자체 MOU체결 등 교류협력사업 기획·발굴 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정책 현장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찾아가는 혁신로드 및 서울정책컨설팅 ‘혁신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캠핑장 운영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농수산물 서울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 도시협력포럼에 관한 사항 ● 市 거주 이산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남북 교류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사업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남북 경제개발 분야 교류협력사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교육, 평화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 서울 평화안보회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 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 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결정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운영 ●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 지원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운영 ● 입학준비금 및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 보조사업 총괄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및 교육분야 후원 업무 ● 교육플랫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관리 ● '서울런' 운영계획 수립 ● 교육플랫폼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용역 등 추진관리 ● 교육플랫폼 에듀테크 사업 발굴 ● 교육플랫폼 교육청 TF 구성·운영 ● 유관기관 연계 플랫폼 홍보 및 활용방안 마련 ● 교육플랫폼 자문위원회 운영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과부분 발굴·관리 ● 교과 콘텐츠 확보·관리(초등, 중등, 고등 부분)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과, 비교과 부분 발굴·관리 ● 저소득층 PC, 통신 연계지원 ● 온라인 학습 교재 지원(협력기관 발굴 등) ● 서울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서울런'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 서울형 교육플랫폼 시스템 구축 ● 교육플랫폼 대상별 서비스 전략 수립 ● 서울런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시스템 운영·관리 ● 서울런 홈페이지 학습지원센터 운영관리 ● 디지털 서울학습배지 인증제 도입 추진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온/오프라인) ● 대학탐방 등 멘토-멘티 친화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표준매뉴얼 제작 및 성과지표 개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센터 운영 관리 ● 학교 안전 및 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학교보안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 학교 노후 CCTV 교체 지원 ● 학교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 사업 운영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하나고 포함) ● 시립시설 체험프로그램 관리 및 학교 홍보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평가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 인생전환지원센터 건립·운영 추진 ● 평생학습 교육경비(장학금) 지원 추진 ● 교육-일자리 연계 정보의 통합 및 맞춤형 제공 ● 권역별 평생학습 특성화 시설 확충 ●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발굴·확산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예산·결산, 조직관리, 이사회, 평가, 현안 등 ● 평생학습도시 국비지원 및 대한민국 인재상 ●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 권역별 문해교육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 ● 생활문해교육(디지털, 교통, 건강 등) 활성화 추진 ● 디지털 평생교육 및 시민성 교육 확대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학력미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검정고시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문해교실 공모·운영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운영체계 개선 및 토론회 운영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 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조성(개보수공사)에 관한 업무 • 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민간위탁)에 관한 업무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 시-대학 협의체 운영 및 연계협력 강화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 • 동네 배움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동네 배움터 운영 성과 관리(성과공유회 개최) • 동네 배움터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협업 • 50플러스재단 이사회, 조직, 예산 등 지원 • 50플러스캠퍼스 사업 및 운영 지원 • 서울시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관련 업무 • 서울시50플러스센터 지도감독 관련 업무 • 50+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 50+전문자원봉사단 운영(기금) • 50+보람일자리 사업 운영 • 50+재단 보람일자리사업단 관련 업무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 신중년 경력형 사회공헌활동사업 운영 • 50+캠퍼스 건립계획 및 예산총괄 • 청소년정책시행계획 및 업무계획 수립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추진 • 청소년육성위원회, 혁신공정위원회 분과 운영 • 서울시민상(어린이, 청소년부문) 운영 • 어린이날 및 성년의날 기념행사, 청소년축제 • 국내·국제교류, 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특화시설(3), 청소년성문화센터(7) 관리·운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 청소년센터(21), 특화시설(3), 유스호스텔(2) 등 관리·운영 • 청소년센터 행사, 특성화사업 추진 • 청소년시설 건립(종로센터 등 6개소)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지원(자치구) • 청소년센터 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관리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건립·확충 • 국고보조사업(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지도사 등) • 특화사업(유스데이, 찾아가는수련관) • 청소년센터 사용료감면 손실보전, 할인손실금 지원(노원) •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 등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및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시립,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및 관련 협의회 운영 •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사업 등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지원 •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지원 • 청소년시설 평가기본계획 수립, 운영평가 추진 •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청소년시설 회계감사 및 특정감사 •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운영 및 협약불이행 제재조치 처분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의회, 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 명예부시장, 청소년 의회 관련 업무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허가, 등록 관리 및 후원 •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 시행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확대 총괄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집행 및 실태 점검 ● 학교급식 관련 교육청 및 자치구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 ● 친환경학교급식 등 조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친환경유치원급식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친환경급식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 급식·먹거리분야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협치사업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안전성 관련 계획 수립·운영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운영 ●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안전성 관련 점검 및 실태조사 ● 생산자-소비자(학교) 소통강화 업무(공동생산자대회 개최)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만족도 조사 ● 친환경급식 식재료 조달(취급·품질)기준 업무 ● 친환경급식 교육 계획 수립·운영 ●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 및 운영 ●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운영 ● 친환경식생활 교구 개발·관리 ● 초·중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 ● 공공급식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달체계 개선 추진 ●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품질, 안전성 및 산지협력 관련 업무 ● 공공급식시스템(수발주시스템, 웹쇼핑몰, 홍보사이트 등) 개발 및 운영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지원 및 민간위탁 지도 점검 ● 공공급식센터 건립 및 임차관련 지원 ● 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 수립 ● 교차산지 확대 추진 ●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및 산지협력회의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e-러닝 콘텐츠 개발, 보수에 관한 사항 • IT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LMS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운영, 강사관리, 강사 Pool관리에 관한 사항 • 7~9급 신임자과정 계획 및 운영,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직급·직위별 리더십 교육에 관한 사항 • '시정 핵심가치 공감마당'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신규 공무원(7~9급)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수렵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5~6급)에 관한 사항 • 전문경력관, 중증장애인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4·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 역량개발 교육 과제개발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시민 인권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 민 감 사 옴 부 즈 만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현장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경찰청, 서울경찰청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 협력 총괄에 관한 사항 • 치안 유관단체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경찰관서장 보임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표창 등 포상업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관련 민원·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찰서장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市행정-치안행정 업무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치안상황 및 주요 사건사고 보고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제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국가이관사업(비)협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자치경찰사무 사업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기능 감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감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인원침해 민원에 관한 사항 • 여성청소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청소년 주요사업·사건사고 관리(시-경찰 협력)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사건·사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시-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주요 협의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감소 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서울경찰청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센터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센터 주요정책 기획·조정, 경영전략, 사업계획 수립) • 경영평가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시·구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처리 등) • 센터 직원채용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총회, 이사회 등) • 직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직무교육, 워크숍, 법정교육, 직원OT 등) •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가족친화, 사회공헌, 내부만족도 등) •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임대차, 시설관리 및 대관, 보안관리) • 고객감동경영에 관한 사항(시민만족도 조사 및 연하장 제작) • 자원봉사 정책 및 사업개발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 오프라인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전략적 기획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 홍보 관련 대외연계(서울시, 서울시출연기관, 자원봉사유관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인정·격려(유공자표창, 문화나눔 등)에 관한 사항 • 해외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코이카 공모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내 재한외국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뉴미디어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 •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직원 및 자원봉사 실무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민·관 협력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 지역협력단체 연계 및 공동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 바로봉사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런칭세미나, 발대식 등 인정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발생시 현장복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서울시·산하기관 등) 자원봉사 운영 지원 (컨설팅, 교육, 수요조사, MOU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중심의 재난 회복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 서울시, 자치구 등 협력사항)에 관한 사항 • V세상 협력단체 발굴 및 지원(V클럽, 단체활동 공모 등)에 관한 사항 • V세상 공유자료실 운영(V스토리 게시판, V레터)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 자원봉사 운영 매뉴얼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 바로봉사단 교육 훈련(기본교육,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 • 재난 자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그 외 재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V세상 시민참여 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 활동경험 기록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자원봉사센터(민영화, 동캠프) 제도적 지원방안 구축에 관한 사항 • 사구자원봉사센터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 캠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구축에 관한 사항 • 캠프 공동사업(내곁에 자원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장기 활동가 심화과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형 청소년 봉사학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소년 봉사학습 매개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봉사학습 광역단위 유관기관 협력 및 공동 포럼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과 연계한 봉사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청소년봉사학습 운영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지역 맞춤형 네트워크 참여센터 모니터링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시·구자원봉사센터 유기적인 협력체계(정책세미나, 통합워크숍, 센터장 회의 등) 강화에 관한 사항 • 자치구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수요처, 단체, 1365)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요처(단체) 활동현장 지원사업(매뉴얼,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수요처(단체) 공동 프로그램 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정책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 수요처 전수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관리자 통합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시민학교(자원봉사-시민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온라인 교육 시스템(e-러닝 플랫폼) 운영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 • 캠프 공동사업(내곁에 자원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신규 활동가 양성과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캠프 관리 및 지원에 관한사항(현황조사 및 지침관리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자 원 봉 사 센 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1365 포털 운영(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및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정책위원회 운영 및 자원봉사 수요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 자치구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수요처, 단체, 1365)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봉사학습 경험관리기반 운영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프로보노와 함께하는 사회변화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멘토링 참여 대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대학생 참가자 경험 브랜딩 포트폴리오 설계 및 운영 • 대학별 프로젝트 리더 모집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활동기관 관리교사 직무교육 지원 및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 • 동행 참여자 인정격려・안전(문화나눔, 시장표창, 상해보험 처리, 봉사단증 제작 등)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온・오프라인 모집 및 확산 홍보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참여 대학생 업무지원(대학생 회원승인, 묻고답하기 게시판 운영, 1365 실적입력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 울 장 학 재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이사회 운영 및 이사장 성과계약 ● 기관경영평가, 직원상시평가 ● 청렴자율준수, 공직기강, 행동강령, 부패방지시책 ● 장학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 민관협력(기금개발 등) ●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 오토꿈이룸서울 장학금 ● 성장지원사업(썸포터즈, 커뮤니티, 멘토링(하계프로그램)) ● 홍보사업(연간보고서) ● 서울희망 고교진로 장학금 ●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 ● 청춘스타트 장학금 ● 고교진로 현황 및 이중수혜 관리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서울꿈길 장학금 ●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 서울우수인재 장학금 ● 서울평화희망 장학금 ● 유영아 학업 장학금 ● 성장지원사업(멘토링, 대학 아카데미) ● 홍보사업(유튜브, SNS 채널 운영, 캐릭터마케팅) ● 시민만족도조사 ●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서울희망 SOS 장학금 ● 서울희망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 감사(청렴자율준수, 부패방지대책 등), 규정 관리 ● 장학생선발관리시스템(정보화전략, 홈페이지), 그룹웨어 운영 ● 인권경영, 성별영향평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경영평가, 원장 경영계약 • 기획, 이사회, 시의회 대외 업무 • 원규 제개정 및 관리 • 인권경영 및 인권 영향 평가 • 진흥원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문회의 운영 • 대외 협력 MOU 체결 외 • 예산 관련 업무 전반 • 경영공시, 정보공개 관리 • 시민대상 기관 만족도 조사 • 연차보고서 기획 및 제작 • 전산, 보안 업무 • 청렴, 감사 업무 • 통합업무관리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 회계, 세무, 결산, 자금 운용 • 급여 지급 및 관리 • 법인 카드 및 수입 관리 • 임직원 연말 정산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조달 업무, 구매 실적 관리 •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 회의운영 및 업무추진비 관리 • 인사제도 기획 및 운영 • 노무관리(노사협의회 포함) • 4대보험 및 근로관련 신고 • 퇴직연금 가입 및 교육 • 시설 안전 업무 및 기록물 관리 • 임직원 교육 기획 및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복무 관리(유연근무, 연차관리 외) • 임직원 복리후생 운영 • 성별영향평가, 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 • 총무(본원 계약 등 관리 외) • 회계 관리 지원, 서류 관리 • 기록물 관련 아카이빙 • 시 응답소 민원업무, 국민제안관리 • 서무 및 본원 시설관리 • 임원 비서업무 • 서울시 평생학습 씽크탱크 위원회 구성· 운영 • 서울시 평생학습 이슈브리프 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현안 과제 대응 • 서울시 직영 평생교육 시설 성과관리 • 모형 개발 연구 • 교육·일자리 정보의 연계 및 통합 서비스 방안 연구 • 서울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진흥원 과제관리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연구자료 아카이빙 체계 구축 • 진흥원 연구수행관리체계 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연구 •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방안 연구 •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협의회) •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선정 심사 •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운영자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홍보 •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 연수 •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 컨설팅 •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 홍보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평생학습도시·진흥원 컨소시엄, 국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운영 • 문해교육 매니저 운영(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 (학습자 지원형 꾸러미) 제작·배포 • 서울시 문해교육 시화전 운영 •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운영 • 문해교육 교·강사 보수교육 운영 • 비대면 학습을 위한 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 제2기 서울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 시·도 단위 국가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워크숍) • 디지털 문해학습장 공모 및 신규 조성 •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양성 및 매칭 •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공모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교육체계수립 및 종합기획 • 실행위원회 운영 및 마스터프로세스 발간 • 모두를 위한 교육디자인 툴킷 보급 • 툴킷FT 운영 및 관리 • 주제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관리 • 사회공헌 프로젝트 및 문화예술행사 기획・운영 • 성과공유 주간 통합 운영 •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관리 • 자원활동가 ‘모두아띠’ 운영 • 통합홍보(온, 오프라인, SNS 운영,오프라인 홍보 등) • 투어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참여자 요구조사 및 초대 프로그램 운영 • 시민커뮤니티학교 통합기획 및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커뮤니티 역량강화 및 활동 공유회 운영 • 주제중심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참여자 관리 • 모두놀이터 공간운영 • 모두의책방 공간운영 및 장서관리 • 시민지식공유 프로그램 문화행사운영 • 학교협력 프로그램 운영(주인공학교) • 주제중심 프로그램 운영(관내기관협력) • 시민커뮤니티학교 운영(시범・정규・지속 단계) • 주제중심 프로그램 운영(성인 대상) • 모두카페 공간운영 •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지원 • 공유 공간(옥상/운동장) 관리 • 주제중심 프로그램 운영(문화예술융합) • 모두아띠 활동 지원 • 시설관리 및 총무, 공유 공간 대관 • 공간조성 및 환경미화 • 시설 안전점검 및 기능 보강 • 기능직 협력업무 • 서울시민대학 종합기획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대외 협력 • 본부 교육과정 총괄 관리 • 본부 교육과정 기획・운영:서울학, 생활환경학) • 운영자문단 구성・운영 및 서울학자문단 운영 • 평생교육사 실습생 관리 • 은평학습장 교육과정 기획·운영 • 은평학습장 학습자 지원 및 상담 관리 • 권역별 학습장 실적관리 • 신규강사 공개 선발・관리 • 강사역량 강화 사업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학습비 징수 및 반환 • 본부캠퍼스 시설・장비 관리, 대관, 안전관리 • 본부캠퍼스 총무업무 및 자산관리 • 본부캠퍼스 기능직 협력업무 • 은평학습장 교육과정 기획・운영(서소문, 디지털 등) • 은평학습장 학습자 지원 및 상담 관리 • 은평학습장 시설・장비 관리 및 대관, 안전관리 • 은평학습장 기능직 협력업무 • 본부 교육과정 기획・운영(문화예술학, 사회경제학) • 문화예술학, 사회경제학 자문단 운영 • 학습매니저 선발, 배치 및 역량강화 • 본부 교육과정 기획・운영(인문학, 시민학, 미래학) • 인문학, 시민학 자문단 운영 • 본부 교육과정 강사료 및 매니저 수당 지급 • 본부 특강 계획 수립 및 관리 • 통합홍보(온・오프라인 홍보 총괄, SNS 운영 등) • 평생학습 포털 관리・운영 • 시민연구회 기획・운영 • 시민대학국 서무 및 업무보고자료 취합 • 명예시민학위과정 모집・홍보 • 시민석사 공통과정 운영 • 시민박사 과정 설계·운영 • 명예시민학위제 연계 프로그램 • 기업 연계 시민대학 운영 • 시민석사 전공세미나 기획・운영 • 시민석사 실천트랙 기획・운영 • 명예시민학위 수여식 기획・운영 • 명예시민학위제 실적 관리 • 대학연계 시민대학 기획・운영(동북권) • 대학연계 지원금 사업 기획·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대학연계 성과 통합 관리 • 대학 협력사업 및 대학연계 2030 대응 • 대학연계 시민대학 기획・운영(서남권) •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협의회 관리 •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기획·운영 • 대사관연계 온라인 심화과정 추진 • 캠퍼스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관리, 행정대응 및 대외협력 • 미래학 특별과정(명사특강)기획・운영 • 미래학,생활환경학 교육과정 자문단운영 • 동남권 감정공간 활성화 및 운영 • 미래학 특별과정(오디오북) 기획・운영 • 미래리터러시 퍼실리테이터 기획・운영 • 미래리터러시 퍼실리테이터 자문단운영 • 네트워크형 미래역량 과정 기획·운영 • 동남권 탐방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 미래학 특별과정(미래탐색) 기획·운영 • 생활환경학 기본과정 기획·운영 • 생활환경학 특화과정 기획·운영 • 동남권 캠퍼스 대중교통 홍보 관리 운영 • 미래학 기본과정 기획·운영 • 오프라인 통합홍보(정규강좌 등) • 동남권캠퍼스 온라인홍보 기획,운영 • 동남권캠퍼스 총무업무 및 자산관리 • 동남권캠퍼스 기능직 협력업무 • 동남권 학습동아리 관리 및 운영 • 캠퍼스 입주 시설관리 및 대관운영 • 시민참여팀 사업계획 및 예산관리 • 프로 N잡러 멘토 특강 기획・운영 • 시민 n잡러 커뮤니티 기획・운영 • 시민기획단 기획·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동남권캠퍼스 대외협력 • 정규과정(3개 학과) 기획・운영(시민학, 문화예술학, 사회경제학) • 동남권 캠퍼스 특강 운영 • 동남권 캠퍼스 학습 매니저배치 · 관리 등 • 시민지혜오름 도서공간 운영 • 시민 참여형 북 큐레이터 사업 기획・운영 • 시민지혜오름 독서 기반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민갤러리 전시 및 도슨트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 유튜브 시민대학 기획・운영 • 유튜브 시민대학 자문단 운영 및 성과관리 • 시민지혜오름 독서 기반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정규과정(2개 학과): 인문학, 서울학 • 온라인 시민대학 기획·운영 • 온라인 시민대학 자문단 운영 및 성과관리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153건

□ 비상기획관 : 9건

1. 세 가지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민방위 교육을 개선하여야 함.
   - 전시 민방위 대원이 소속, 임무,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방위 대피소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과정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게끔 하는 방식 등을 교육내용에 도입할 것.
   - 민방위대원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흥미를 높이고, 주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전쟁, 시가전 등 달라진 현재전양상에 대한 최신정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업무보고에는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않고, 민방위교육도 기존교육을 답습하고만 있음. 전·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목표 실현에 맞고, 달라진 시대상황·전쟁양상·현실을 반영하여 민방위 업무·시스템·교육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함.
3. 민방위 교육 시 연령층에 맞는 세대별 맞춤 교육이 필요.
4. 행정감사자료에서 비상기획관 비상대피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확인하면 해마다 총평이 거의 대동소이하여 매년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현장중심의 직접적이고 내실있는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5.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이때에, 안보정책자문회의 위원들의 참석률은 저조함. 안보정책자문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6. 민방위대피시설에 전시 급수시설이 중요하니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유사시 사용가능한 점검 및 조치 요구.
7. 안보의식함양 사업 주체 및 지원 다양화 - 안보의식함양 사업으로 재향군인회 1곳에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등록된 25개 비영리단체에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여, 매년 반복되는 동일 사업이 아닌 공모를 통한 질 좋은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주길 바람.
8. 민방위 대피시설을 시민에게 알리는 기존 홍보 방식(앱, 지하철 광고 등)은

효과가 크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방안 강구할 것(학교통신문 발송, 전입신고 시 대피소 안내, 통반장·경로당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용 등의 방법).

9. 기존 민방위 마크 3색은 경계경보(황색), 공습경보(청색), 해제경보(녹색)를 의미함. 새로운 민방위복의 마크는 건·곤·이·감을 새겨 넣었으나 그 의미를 알 수 없음. 민방위 대피소의 안내표지판은 민방위 마크와 동일하고, 유사시에 시민들은 표지판을 확인하고 이동함. 급작스러운 민방위복과 마크의 교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 민방위복과 마크의 교체가 꼭 필요한 일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불가피할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 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10건

1. 시민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사경에서 직원 출장비 과다지급 문제를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음. 민사경 내부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므로 향후 출장 수당 부정 수령 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길 바람.
2. 범죄양상이 정교해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수사인력의 숫자와 질 모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디지털 포렌식 수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
3. 감사위원회로부터 출장수당 과다지급. 유연근무제 출결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지적받았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수사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그 이유로 코로나의 확산, 자치구 파견 직원 부족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함.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의 개선도 중요함. 실제 수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내년에 예산을 쓸 때는 월별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6. 민생사법경찰단 내부직원의 재직기간이 짧은데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해

보임. 재직기간을 늘려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줄 것.

7.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민사경이 5등급을 받음.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대로 모색해 주길 바람. 이후 청렴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해 의회에 보고 바람..
8. 민사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강의 내용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관련 사안에 대해 파악할 수가 없음. 행감 자료 제출 시 직무와 관련된 소송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9. 대리입금이라는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상공개, 폭행 등의 2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음. 사무 해당 여부에 따라 사안을 보거나 칸막이를 만들지 말고, 수사와 예방은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10. 동물보호와 같은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홍보를 강화해야 함. 온라인 홍보가 주이긴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이 효과는 더욱 뛰어나므로 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길 바람.

□ 행정국 : 23건

1. 서울혁신파크 사업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로부터 20개가 넘는 지적 사항이 발생했음. 이에 관한 시정사항 보고하길 바람.
2. 서울혁신파크 재개발까지 2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재개발 터를 방치하지 말고 해당 공간을 은평구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세울 것.
3. 지원받는 비영리단체를 선정할 때 촘촘히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처음 선정 목적에 맞지 않게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게 페널티를 부여해 원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할 것.
4. 일련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임시장 업적지우기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의심이 듦. 합리적·논리적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바라보고 검토하길 바람.
5.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는 권고에 불과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관련 행안부 지침(사고, 사망자로 쓸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참사의 책임자로서 분

향소 명칭을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 부적절한 분향소 명칭 사용·변경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함.

6.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명칭 변경 관련, 유족이 울분을 토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나서야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를 변경했다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므로 정정할 것.
7. 힐링센터 상담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지 않음. 공무원들을 위한 마음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
8. 힐링센터 상담신청시 개인신상정보는 최소한만 기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신청지를 수정할 것.
9. 청사 매점에 대해 내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점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0. 용역을 발주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세워 비슷한 내용으로 용역이 발주되는 확률을 줄이도록 하고, 되도록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진행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11. 대외직명제 규정이 시행된 지 10여년에 이르는데도 변동이 없고,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부서에서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직명제에 대한 허술한 운영과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업무분야 표시 없이 사용하는 대외직명도 허다해 시민들이 담당직무를 파악할 수 없는 불편이 일고 있기에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외직명 방침 등도 함께 개선되야 함. 대외직명의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함.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이 미흡함. 다양한 사업이 개설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13. 주민자치회 사업의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함.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사업 예산을 늘려야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자치사업이 가능함.
14.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를 시정할 것.
15. 청원경찰 및 공무직의 낙후된 복리후생에 대해 개선할 것. 또한 이들의 고충을 전담해서 해결해주는 부서를 신설해야 함.
16. 시청, 구청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수신 대기 중에도 통화요금이 부과된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음. 이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

17. 민간영역이나 공적영역이나 개인간의 관계나 약속·신뢰가 매우 중요. 일방적인 사업종료·예산지원 중단은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시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각종 위탁사업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평가를 추진한 뒤 사업종료 관련 입장을 정립하는 등 일방적인 지원중단 및 위탁종료 행태 시정할 것.
18. 일방적인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용종료 재검토하기 바람. 적어도 조계사와 협의해서 조례상 허용하고 있는 90일의 범위에서라도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하고 논의방향을 새로 설정할 것을 요구함.
19.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으로 이용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직계 가족 외 방계친척, 지방에 사는 일가친척까지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과도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행했을 때 사용 가능하고, 가족의 범위도 직계가족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연수원 이용 시 공무원의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가족관계증명서, 통화 등)가 매우 허술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1. 서울시는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종료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계사와 1년 2개월 간 민간위탁 계약을 진행했고, 사업 종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조계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함. 이로 인해 현재 다수의 근무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놓였음. 법적인 공방 이전에 서울시 또한 현재의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대안을 강구하길 바람.
22. 마을관리소 사업은 중단 예정임. 중단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 사업의 시작도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이 없어야 하지만 사업의 종료 또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마을관리소 사업은 시작도 끝도 석연치 않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선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3. 주민자치 사업을 이어간다고는 하나 예산과 인력의 지원은 중단함. 사람도 돈도 없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일몰 사업과 다르지 않음. 주민자치사업이 자치구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할 수 있으나, 광역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구조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자치구의

자치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재무국 : 13건

1. 재무국 간부 중 특정 학교 출신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 시정하기를 바람.
2.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 자료를 수정한 사항이 너무 많음. 향후에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기초적인 오기는 줄일 것.
3. 국세와 시세 세금추징 실적이 65배 가량 차이나고, 2020년 부과 취소되는 비율이 약 35%에 이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수대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보다는 인원 부족, 승진 등의 동기부여 부족, 송사부담(세무조사팀 자체 수행) 등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큼. 세무조사활동에 대한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구현할 것.
4.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기본과제 목표는 15건이었으나 제출자료 기준으로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4건이었음. 반면, 외부 위탁 연구과제는 2021년 11건에서 올해 3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즉,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 수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위상에 맞는 자체적인 기본과제 연구 수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5.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실적이 저조함.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6.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신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보임. 시민들이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에 대해 널리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7.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재무국에서는 빠르게 공유재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바람직하지 않기에 재무국은 원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람. 이 외에 공유재산 매입 취소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건이 발견됨.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기를 바람.
8. 의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이 취소·보류·변경되었을 때는 계획안을 제출해 의회에 보고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무국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취소·보류·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의회에서 재무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짐. 의회에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이를 시정하기를 바람.

9.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난 행감 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주길 바람.
10. 팀장들에 대하여 초과근무 총량제 상한 권고 시간 이후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는 등 무리한 야근을 지양해주시기 바람.
11.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자문회의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자의적인 운영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12. 시세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사업 관련 포상금 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포상급 지급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근거 확인 및 작성을 명확히 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3. 지방세연구원의 서울시 연구과제 수행 실적 저조(2021년 서울시 6건, 행안부 26건) 과도한 출연금의 산출방식 개선 및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할 것.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단기적 7:3)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세후 확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평생교육국 : 24건

1. 공유재산에 영구시설인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 시설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음. 영구시설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유권해석 또는 입법적 근거를 찾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길 바람.
2. 현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사업을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

정하는 조례가 아님.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게끔 할 것.

3. 활동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동아리에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동하고 있음. 환경 개선, 역사 교육 등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으니, 그런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4.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폭 투자와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2년동안 중장년일자리 사업에 전문성을 키워온 50플러스재단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임, 그러나 반대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폐합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함.
5.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무게감은 더욱 커질 것. 중장년일자리 종합지원 대책을 실천해온 50플러스재단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임. 통폐합이 아닌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기준이 되어야 함.
6. 서울런과 경계선지능인 사업의 대상인원과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듦. 서울시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평생교육국의 본분과 역할에 적합하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제고하여야 함.
7.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차원에서의 관리 실태는 부족해 보임. 업체관리를 자치구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치구와 함께 관리감독할 방안을 마련할 것.
8.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과 관련해, 참여하는 기관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급식 문제로 인한 환불금이 증가하는 등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음.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관리가 부실해 보이니 개선할 것. 특히 산지 및 위탁업체 선정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식자재 품질 등 관련한 지도·감독 방법을 마련할 것.
9. 청소년 센터 운영 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할 것.
10.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은 힘들어서 오는 것이므로 찾게 된 연유에 따라 각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도움을 받고 충분히 치유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11. 서울런(교육플랫폼 사업)은 교육부의 K-에듀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서울 시민의 안전, 행복 등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평생교육법상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교육 콘텐츠를 서울런에 탑재하는 것은 부적절함. 시정 필요함.
12. 온라인 도박, 성매매 등 인터넷 유해 환경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화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음. 온라인 차원에서의 유해 환경 정화에도 신경 쓰길 바람.
13. 공교육강화로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당국의 일관된 정책방향이었고, 서울시민이 교육감 선출로 그 뜻을 이미 표출했음. 그러나 서울런은 그동안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고, 시민의 뜻과는 반대의 정책철학으로 만들어진 정책임. 서울런의 정책적 관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함.
14. 서울런을 평생교육으로 개념으로 본 가장 중요한 헌재 사건번호(2010헌마144)를 다른 사건번호(2010헌마114)로 제출함. 판례를 언급하면서 사건번호를 틀리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므로 정정조치할 것.
15. 헌법재판소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는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후로 봐야함. 그런데 평생교육국은 이를 시간 기준인 '방과후'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및 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여부에 대해서 다시 법률검토를 받을 것.
16. 서울런은 정규교육과정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은 교육환경 조성이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17. 서울런멘토링 관련 성범죄 예방 및 학생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거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 등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멘토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것.

18. 서울런 사업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부 등의 사업과 유사, 중복’ 되며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의 투입은 신중’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므로 지금은 사업의 확대보다는 중복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한 절차와 수순을 밟는 것이 필요함.
19.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라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런 사업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청이 배제된 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20. 서울런을 수강하기 위해 교재를 구입했으나 해당 인터넷강의 업체가 2022년 서울런 사업에 재참여하지 않아 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음. 이는 예산의 반영과 업체와의 계약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 기간에 기인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될 소지가 있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1. 서울런의 멘토링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서울동행 사업과 목적, 현장에서 운영하는 형태 등이 매우 유사함. 오히려 10여년의 경험이 누적된 서울동행이 서울런에 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인원 등 규모 면에서도 월등함. 그러므로 유사 중복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서울동행과 통합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평생교육국의 지난 1년 보도자료 35건 중 20건이 서울런과 관련 있음. 이는 평생교육국 사업이 대부분 서울런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서울런에 매몰되지 말고 평생교육국 본연의 업무를 회복하기 바람.
23. 교육부 K-에듀 사업과 서울런 사업의 중복성 관련하여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과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협의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임. 행안부의 경우 콘텐츠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임. 그러므로 보도자료 및 답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된 내용과 행안부의 조건부 합의 및 시정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재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24.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서울런의 경우 165억원이 투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

음. 단순 콘텐츠 제공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음.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 인재개발원 : 10건

1. e러닝 프로그램마다 참여율의 격차가 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필요한 e러닝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됨. e-러닝 교육과정의 꼼꼼한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개선하기 바람.
2.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충실히 역할을 해왔으나,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 중심에서 이제는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함. 선배공무원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토론식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방식을 도입하여야 함.
3. 비대면 교육 중 운전하면서 강의를 수강하는 장면이 캡처되어 제보됨. 비대면 교육 출결 관리와 수업 진행하면서의 수강자 교육 참여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할 것.
4. 교육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람.
5. 대상 교육생의 필요한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세대별·대상별로 알맞은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3년내내 추진 중인 사항이 있음. 개선 요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며 2022년도 행정감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그에 따른 결과를 계속 위원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7. 인생 이모작 교육을 진행할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을 원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람.
8.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와 입소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9. 지난 상임위(제314회 임시회) 회의에서 리더십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 답변은 교육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며 동문서답의 답변을 함. 평가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다음 업무보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0. 본래 강북 수유영어마을로 인재개발원을 이전하기로 했었으나, 서울연구원 이전 이후 해당 건물을 활용해 서초에 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당초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이 추진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재개발원 강북 이전을 추진해 주기 바람.

□ 감사위원회 : 14건

1.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 가능 여부 검토 및 감사에 나서 위원회의 책무를 다해야 함.
2. 4기 인권위 발족까지 7개월이 소요되었고, 조례상 정해진 연 4회의 정례회도 열지 못하게 되었음. 인권위를 조속히 정상 운영하여 이러한 상황을 시정할 것.
3. 서울시청 직원 인권교육 이수율은 37%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이수율을 제고할 것.
4. 행정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의 예산집행율 수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 제출된 자료들의 수치에 오차가 발생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앞으로는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
5.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2등급을 받음. 그러나 2021년도 4등급으로 점수가 하향됨. 신뢰받는 서울시가 되기 위해 청렴도 등급 유지에 힘써줄 것.
6. 용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 감사할 것.
7. 인권은 다수집단이나 소수집단이나 누구에게나 중요하니 인권교육시 계층을 나누지 말고 보편 타당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
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시의회 의원들의 임기 전 의원 자리가 공석인 채 위원회가 개최됨. 시의회 임기는 정해져 있으므로 의원 위원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회의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9. 공무원 안전순찰의 경우 성동구 감사담당관 288건, 강동수도사업소 114건 등 자치구 간 신고 건수의 차이가 있음. 신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신고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줄 것을 당부함.

10. 스마트밴드, 서울런 사업에 법령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가 예비점검에 나서야 함.
11. 조사담당관의 업무로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점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오세훈 시장 주요 시책사업 파악 현황, 점검한 내용,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경우 잘못된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등 제대로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반대로 시정을 견제하고 쓴소리를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는 오세훈 시정을 앞장서서 비호하는 조직이라는 평가가 있으므로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함.
13. 감사위원회의 목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별시를 구현하는 것. 공정과 신뢰는 정의로운 과정과 공평한 결과가 전제되어야 함. 이는 시장이 누구든 시장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피감기관이 어디든 결과가 객관적이며 납득, 타당해야 함을 의미함. 하지만 최근에 진행된 감사들의 경우 시장의 의도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퍼즐을 맞추는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감사위원장이 감사원에서 파견되었던 과거와 달리 시장이 임명권자인 순환보직의 행정공무원인 현 체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음. 이러한 지적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는 가일층 정의롭고 공평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4.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에 대한 특정감사는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마종에 대한 감사는 '건의사항'으로 서울런 사업은 여러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를 적시함. 행정사무감사의 강력한 지적사항인 시정요구사항은 도외시 하고, 건의사항만 받아들여 감사의 근거로 명시한 것은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서마종의 감사가 애초에 형평을 잃은 표적 감사임을 보여주는 단면임. 감사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한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0건

1. 위원회 감사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부서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신뢰 있는 결과 도출이 필요함.
2.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표준국어대사전 표기법에도 맞지 않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시민이 직관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명칭을 변경(예-고충처리위원회, 민원도우미위원회 등)하는 것이 필요함.
3. 모서리 광고, 사례집 배포는 모바일 시대에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아님. 획기적인 아이디어 없이 관행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듦. 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SNS 광고 등 더 많이 노력해주기를 바람.
4. 예산편성 시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편성을 지양해주기를 바람.
5.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이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인원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보길 바람. 그래서 정말로 예산 증액 필요한지 확인하길 바람.
6. 위원공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 중점감시 활동 업무목표를 상향하고 위원 채용 1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위원회 역량 강화할 것.
7. 국민권익위 경우 이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기관이나 부서로 이송·이첩되었다가 다시 재이송, 재이첩받는 소위 '핑퐁민원'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등 개선할 것.
8.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점 감시 사업 목표를 상향하고, 상반기 집행율 제고할 것.
9.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민원배심원제도 역시 2년 연속 1건씩에 머물러 있음. 홍보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효과가 없다면 홍보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면 내부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
10.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실적은 2021년 1건, 2022년에도 1건임. 이에 더하여 2023년에는 주민감사 온라인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임.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외형적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결과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

에서 벗어날 수 없음. 적극적으로 시스템 운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 14건

1. 자치경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관련 보고를 받았음. 따라서 서울시, 각 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2. 행사주최가 없다는 것이 면피의 이유가 될 수 없음. 주최자 여부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시민이 운집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당연 경찰에 있기 때문임. 이를 반성하고 시정할 것.
3. 정부·지자체(서울시, 용산구청) 차원의 재난컨트롤타워가 모두 부재했고, 이태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관리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사의 원인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4. 참사 이후 여러 책임자들이 면피성 발언을 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한정해 관리한다는 면피성 발언을 했음.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
5. 자치경찰 대상 저조한 교육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6.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만들어주기 바람.
7.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낮은 점수가 나왔음. 수직적 조직문화, 부정확한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부당성 등을 개선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주길 바람.
8.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지구대, 파출소, 교통정보센터 등 시설의 심각한 노후도 등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언론인터뷰를 한 바가 있음. 주최자, 다중운집행사 정의 등 운운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태도이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
10. 주최 존재 유무와 관계없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중운집행사'를 주최가

있는 경우로만 과소 해석하여 업무를 추진했음. 다중운집행사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라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며 해명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함. 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할 것.

11.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서비스 등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각 사업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현장에서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통합, 조정안을 마련하고 마을의 치안, 방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
12. 이태원 참사의 공식적인 참사 발발 시간은 10월 29일, 22시 15분임. 자치경찰위원회는 23시 30분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통보받고 참사를 처음 인지함. 서울시와 경찰청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하고 거꾸로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청 내 위상이 보잘 것 없으며 역할은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것.
13.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시점은 참사 발생 다음 날 오후 3시임.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를 경시하고 있는 결과임.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체계의 정비 및 개선 필요.
14.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1. 지구대, 파출소 등의 현장 업무가 자치경찰 소관으로 이전 2.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자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 3. 인사권의 독립과 실질적 임용권의 수행 등이 절실함.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행안위에 건의 1건 보낸 것이 전부임. 위원장은 2022년 출장 26회 중 반려견 순찰대 관련 업무가 5건임. 반려견 순찰대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 위원회의 상황에서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때임. 현장 업무의 이전,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인사권의 독립 등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전략의 수립을 요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11건

1. 자원봉사센터에서 15개 영역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 이중 꼭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삭제하고, 범죄예방, 교통, 기초질서 유지 등의 필수분야가 추가되었으면 함.

2. 센터의 법인성이 정리되지 않아 법적기준·근거에 따른 행정이 아닌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센터의 재단 법인화 등 법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 필요.
3. 봉사 홍보물 제작 시 성별 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해 홍보물에 반영할 것. 사전 협의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향후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것.
4. 봉사자들을 유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령층 등 다양한 연령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연령대에 적합한 자원봉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 특히 고령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5.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과다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길 바람.
6.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이수, 봉사활동 과정 관리 등의 소극적 방안에 그치지 말고, 자발적으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 할 것.
7. 등록 자원봉사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실제 봉사에 참여한 실인원은 크게 줄고 있음. 결국 부족한 인력을 관변 조직(통장 등)으로 채우거나, 소수 봉사자의 중복적·반복적 전방위 활동에 의존함으로 현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 열정 페이와 유사한 감성적 강요에 의한 자원봉사 방식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 대안을 강구 할 것.
8.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 폐지로 10대 자원봉사자 수가 현격하게 줄었음. 강요에 의한 봉사는 바람하지 않으나, 어려서부터 봉사에 참여하여 함께 돕고 나누는 습성을 고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젊은 층의 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
9. 서울동행과 서울런 멘토링 서비스, 지역맞춤형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 목적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운영되는 형태는 매우 유사함. 설계자의 의도와 달리 중복, 반복된 사업은 현장 활동가들의 부담과 피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타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

템도 강화해야 할 것.

10. 서울시는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많은 기관과 사업을 종료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 7월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와 별개로 바로봉사단을 발족함. 하지만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이고 신속한 긴급대응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바로봉사단이 정작 그 이름과 취지에 걸맞지 않게 이태원 참사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직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 및 재조정할 것.
11.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주력사업인 서울동행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 서울장학재단 : 10건

1. 행정적 관점에서 주어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안주했던 그동안의 장학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를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장학사업을 추진·개선하여 서울장학재단이 서울시민의 희망이 되도록 할 것.
2.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의 동점차 처리기준이 단순히 '전문가 협의'로만 되어 있어 기준이 애매모호함.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3. 장학생 선정기준을 보면 장학금의 대부분이 정성적 기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장학재단의 모든 장학금 선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각 장학금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4. 장학금 지급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단기 장학금 및 장기 장학금으로 나눠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5. 사업의 수 확대가 아닌,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의 재편이 필요. 서울장학재단에서 성적과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여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효과적으로 수여해야 함.
6. 장학금 지급 시기가 재단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필요한 학생들이 적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7. 장학사업이 대학생, 고등학생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초등학생, 중학생

등 어린 학생, 대안학교 학생 등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출하도록 시정할 것.

8. 서로 유사한 성격의 장학금의 경우 검토를 통해 통합할 것.
9. 장학사업의 방향과 대상을 정하는 것도 시대가치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함. 국가의 경제력이 부족했던 시절엔 엘리트를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음. 이제는 부적응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사업의 전환이 궁극엔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임.
10. 장학재단의 16개 사업 중 대학생 대상이 16개, 고등학교 대상이 5개 사업임. 장학사업 대상의 연령층 확대뿐 아니라 부진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5건

1. '혁신' 프로그램 표현 관련 - 시민이 기획자인지 그 여부 등에 따라 '혁신'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람, 제대로 된 다양성과 접근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체 인건비의 34%가 아직 불용인 것은 계획 없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 인건비 등 예산 12월 내 목표대비 소진 여부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함.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까지도 교육받을 수 있게 체계성을 강화할 것.
4.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가 많음. 그런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자치구에서 또 만들어 운영하면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하길 바람.
5. 동네배움터가 다른 사업과 구별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가 아닌 별도 공간에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일반적인 강사풀·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제공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나. 건의사항 …… 141건

□ 비상기획관 : 11건

1.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폭우로 인한 수해, 이태원 참사 등)에 서울시 안전총괄실 등 여러 부서 간 유기적인 대응책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길 바람.
2. 화생방 방독면을 재난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방독면은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데, 다중 운집 시설 등에 추가로 비치하여 지하철 화재 등 유사시에 시민의 안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3. 비상기획관이 4년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언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것에는 서울시에 분명 책임이 있음. 전·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서울시와 토론하고 결론을 내야 함.
4. 비상기획관에서 서울형민방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음.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민방위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5. 세대별로 다른 안보 인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대별 맞춤 민방위 제도 도입이 필요함.
6. 각 동의 방위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7. 재향군인회는 지원이 많지만, 동 방위 협의회는 지원이 없음. 동 방위협의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비 등 지원이 필요 하나, 미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 요구.
8.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음용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9.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재 제작을 개별 자치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공통적인 교육을 하는데 3개 업체로 나눠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
10. 민방위복이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 3, 기초 2개 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민방위복의 전면 교체는 막대한 국가적인 예산(300억원 추정)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현장 혼란도 우려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만큼 장단점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행정과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

11. 최근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처리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건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9건

1. 신규 및 내부 직원에 관한 수사 직무교육이 부족해 보임. 수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절차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할 것임.
2. 온라인으로 위조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단속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람.
3. 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민사경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람.
4. 전문수사자문단의 안정적 운영과 수사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5. 인센티브 부여 등 내부직원 사기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6.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전문관 지정을 통해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7. 주택과와 연계해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동물보호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의 반려경찰단, 민간단체, 동물병원 등과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함.
9. 최근 3년간 수사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고 하나 그 기간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님. 오히려 범죄는 더 다양해지고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음. 수사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행정국 : 13건

1. 서울혁신파크를 새롭게 개소하면서 기존 터에 남아있는 160여 개의 업체를 퇴거해야 하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할 것.

2.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합에서 이번 주말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영리단체가 과도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함. 교육 문제, 환경문제 해결 등 더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함.
3.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지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자료 제출 협조(공문 발송) 및 제출할 것.
   - 재난 상황 일지, 현장출동팀 명단·출동시간·도착시간 등,
   - 112, 119, 120 등 각 신고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 등 취합자료
4.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청년층에게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5.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인원 배치, 인사적체.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MZ세대의 공직이탈이 심화되고 있음. 업무량이 많고, 대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 더 많은 직원과 자원을 투입하는 등 조직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꿔나가야 함.
6. 행정국은 서울시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고민 필요.
7. 공무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외부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힐링센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할 것.
8. 본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으로 운영하지 말고 향후 지속적으로 본예산으로 편입시켜 추진해야 할 것임.
9. 행정국 자체 청렴도 조사를 살펴보면 인사 분야의 점수가 낮음. 행정국의 인사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줄 것.
10. 공무원들의 역량평가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11.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요하지만, 기부금품 모집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기부금 목표액은 크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모인 기부금품은 목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효과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적절하게 홍보를 해주길 요청함.
12. 서울시 연수원은 직영(속초). 민간위탁(서천, 수안보), 임차(제주)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22년 운영만 비교하면 제주연수원이 운영비는 가장 적고 만족도는 가장 높음. 직영과 민간위탁이 기존 서울시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 결과임. 직영과 민간위탁 연수원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여 주기 바람.

13.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들은 해마다 이용빈도는 낮아지고, 적자의 폭은 커지고 있음. 시설은 노후하고 관리도 허술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사설 캠핑장과의 경쟁 이전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도 벤치마킹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큰 변화가 요구됨.

□ 재무국 : 15건

1.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매년 2,000억으로 획일적으로 책정해 놓았음. 매년 관행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므로 유동적인 목표액 설정이 필요해 보임.
2. 체납 지방세 징수 시에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공조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주기를 바람.
3. 세금 징수 시에 자치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치구에게 징수 권한을 주고 그 성과를 평가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세금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기를 바람.
4. 세무조사팀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고 징수요원이 장기근무할 수 있고 보람과 성취를 얻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인센티브 제공, 세무조사과 신설을 통한 업무 위상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독권이 전혀 없는 상황임.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감독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람.
6.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7.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가택조사 후에 개인의 사생활 영상을 과도하게 노출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 체납자 동산압류에 따른 가택 수색시 개인사생활 노출 문제가 있었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8.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에 있어서 서울시가 17위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혁신적인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를 추징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해나가기를 바람.
9. 평창동 미술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신경 써주기를 바람.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 예산 편성 사업에 관한 지적이 계속됐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미리 걸러야 한다고 보여 짐.
11. 매년 수십억 원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수급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 적정예산이 책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를 바람.
12. 공유재산심의회에 서울시의원도 당연히 참석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13.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신인도 가점 중 '성평등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명칭 변경과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4. 2021년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10.7%, 지방세의 경우 26.9% 초과 징수가 발생함. 세입추계의 오류는 본 예산의 건강한 편성에 지장을 초래하며, 방만한 추경의 원인이 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방기하게 되고, 예상하지 않은 전출금의 발생으로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좀 더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산식을 통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계를 결산에 근접하게 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함.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안건 중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부지 사용의 문제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됨으로서 이후 불가피한 예산의 추가 집행 또는 불리한 조건에서 자치구와 소유 및 운영에 대해 협상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유지 및 국유지 등에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착공 전 토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 평생교육국 : 20건

1. 서울런이 입시교육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길 바람. 예를 들어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서울형 교육플랫폼과 연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람.

2.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탁사업이 종료되지만, 정규직 인원 고용승계, 기존 프로그램 이관 운영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결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배치라는 것은 우려의 지점이 있으므로 세심하게 신경 쓸 것을 요청함.
3. 문해학습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배움터(디지털재단)와 유사하므로 해당 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이 필요하니 검토하기 바람.
4. 서울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국가의 디지털 교육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해 검토할 것.
5.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의 금액과 지원 대상이 터무니없이 적음.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자립지원수당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6.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 시설들이 님비시설로 낙인찍혀 지역사회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7.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가 편향된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이므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
8.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를 제대로 평가하여 다른 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할 것.
9. 쉼터 유형구분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쉼터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학대, 성폭력, 성매매 등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입소하는 경우가 있음. 입소 경위에 따라 구분을 두고 치유 정도에 따라 보호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10.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강화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것.
11.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고 학생과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은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서울형 교육플랫폼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 것임. 서울형 교육플랫폼과 고교-대학연계가 일부 중복되어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12.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람.
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기를 바람.
14. 청소년 쉼터 사업의 성과가 미진함. 이에 대해 개선해주기를 바람.
15. 다른 자치구에는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유일하게 종로구에만 청소년 센터가 없음. 종로구에도 청소년 센터가 건립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
16. 예체능 전공 졸업생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길 바람. 이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17. 서울런 등을 활용해 기초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에 대한 학습도 진행하도록 할 것.
18. 서울시가 근거로 활용한 논문(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에서 사용한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용어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고, 소득차이가 교육격차를 발생시켰다거나, 저소득층일수록 교육성취도가 낮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 바람.
19. 시의회와 평생교육국 간 법령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2021, 2022년 교재 쿠폰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법률유권 해석·자문을 다시 의뢰해서 검토 내용을 제출할 것.
20. 플랫폼 구축과 멘토링 형태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보다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식(바우처)통해서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인재개발원 : 11건

1. 인재개발원의 청사 이전 대상 지역으로 강북 수유 영어마을이 지정됨. 그러나 국가 타당성 조사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등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일관성 없는 타당성 조사를 지양하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도록 할 것.

2. 30년 이상 노하우를 쌓은 퇴직 공무원이 신임공무원에게 성공담, 조언,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 일반적인 강의 형태가 아닌 토론식 수업 형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3. 비대면 교육 운영 시 수강자의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부적절한 수강 행태는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것.
4. 행감자료를 보면 예산불용율은 높고 집행률이 낮아 연말에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임. 다음 해부터는 사업을 월별로 제대로 진행하고,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행태는 지양하기 바람.
5.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은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강남북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청사 이전을 결정하기에는 큰 예산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판단은 지양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청사 이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6. 업무보고서를 보면, 9월말 기준으로 70%미만의 진행율을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스러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밀렸다고 답했는데 연말까지 사업진행을 완료해 줄 것.
7. 코로나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인재개발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해줄 것.
8. 인생 이모작 교육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비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참여율은 저조함.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9. 취미, 자격증, 봉사활동 등 서울시 차원에서 기업체 연계, 귀농연계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바람.
10.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정원을 매년 못 채우고 있음. 이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은 예산 낭비와 마찬가지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와 입소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1. 인재개발원 어린이집에 서울시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인 경기도 자녀까지 입소하는 것이 타당하였는지 의심이 됨. 오히려 서울시민들의 어린이집 이용권이 제한될까 염려가 됨.

□ 감사위원회 : 13건

1. 위법 사항에 대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할 것. 이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감사를 해주기를 바람.
2.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인 공익감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3. 자료제출 협조 요청 〔10월 29일~30일에 해당하는 안전총괄실 산하 재난상황실 업무 일지·서울시 종합상황실(당직실) 업무 일지·120 다산콜센터 신고 접수 현황 및 내용〕
4. 서울시 직위표 상 행정1, 2부시장 산하에 있는 모든 담당관, 실·국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임.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권자인 시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온도와 눈높이도 감안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검토해 줄 것.
5. 시설물,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사전적인 감사활동 활성화가 필요. 앞으로 감사위가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하길 바람.
6.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의 성과가 좋음.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주기 바람.
7. 명예하도급호민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협업할 수 있도록 고민해볼 것.
8.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고민해볼 것.
9. 공직자재산신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원들이 공직자재산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이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원들에게 공직자재산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
10. 공무원 안전순찰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해 줄 것.
11.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 신경쓸 것.
12.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밴드, 서울런 사업은 물품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는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검토내용 제출할 것.
13. 서울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스마트밴드를 나눠주는 사업으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선거법 위

반 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음. 서울런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부 등의 사업과 유사, 중복', '사설학원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교육청이 아닌 서울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그러므로 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혼란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8건

1.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 바람.
2. 옴부즈만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노력해주길 바람.
3. 서울시 집행부는 문제가 있으면 옴부즈만위원회를 핑계 삼아 책임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음. 집행부의 이러한 관점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위원회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4.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는 시민들이 구별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5. 타 부서와 업무 중복성이 겹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만의 특색을 강화시켜야 할 것. 시민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집단갈등이나 난이도 있는 민원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6.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무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막중하기에,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줄 것.
7. 민원인들의 고충 민원 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해보길 바람.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그 역할이 없지 않으나 다른 부서와 중복되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없애기엔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민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니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계륵과 같은 부서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시민의 아픔과 고충을 보듬어주고 힘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의 변화와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자치경찰위원회 : 10건

1. 경찰법 및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교통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로 되어 있음. 하지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아직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음. 교통안전심의회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옮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교통안전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길 바람.
2. 사건 발생 시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
3. 학교폭력 예방에 투입되는 인원(SPO)은 133명인데 이들이 담당하는 학교는 1400여 개. 1명당 담당 학교가 10개 이상으로, 너무 많아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 실효성에도 의문이 감. 개선책이 필요함.
4.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cctv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함. SPO가 항시 cctv를 주시하고,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행정을 할 것.
5. 서울 자율방범대원 활동과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그런데 안심마을보안관(18억) 대비 서울자율방범대(1억)에 대한 예산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6.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해 보임.
7.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 소속으로 만들어진 것임. 금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매뉴얼, 조례 규정 탓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8. 이태원 참사 유실물 처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것은 다행이나, 애초에 기간을 1주일로 짧게 지정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행정편의적으로 조치한 것. 현장에서는 유실물을 찾아가는데 혼선이 있다고 하므로 챙겨주기 바람.
9. 디지털성범죄 업무는 시 소관이라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답변을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조례상 성범죄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이므로,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람.
10. 자치경찰위원장이 해야할 일은 자치경찰사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임. 행사장 다니는 것은 줄이고,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15건

1. 국내 봉사자들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대면 봉사활동이 줄어들고 비공식적으로 봉사하는 인원이 늘어서 집계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다시 집계 후 보고하길 바람.
2. 바로봉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과 유형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
3. 외국인 자원봉사의 참여 증가에 맞춰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4.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국적 분류나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자료화하여 사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5.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이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의 관심을 부탁드림.
6. 갈수록 재난, 비상상황에 대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커질 것. 국가적 재난상황에 자원봉사센터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방안을 고민할 것.
7. 행정국과 협의하여 탈북민 자녀들의 학력 격차 해소, 외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등 동행 프로젝트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8. 자치구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현황에 차이가 큰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9. 직장 봉사단체, 민간 봉사단체, 직영 봉사단체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람.
10.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11. 센터의 자율성과 재정 독립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확대 노력이 필요함.
12. 청년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 정도로 대학생 중심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준비생, 대학졸업생 등 대학생이 아닌 다양한 청년들도 봉사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센터를 통해 자원봉사를 경험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이 타 광역단체의 센터에 비해 크게 적음. 자원봉사센터는 집행부의 지원과 간섭에서 벗어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정의 자체적 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14.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보다는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음(25개 자치구 중 16곳 직영). 최근 2년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음. 자원봉사라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자치구 센터들이 직영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추진이 요구됨.
15. 서울동행과 서울런 멘토링 서비스, 지역맞춤형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 목적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운영되는 형태는 매우 유사함. 설계자의 의도와 달리 중복, 반복된 사업은 현장 활동가들의 부담과 피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타 부서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하여야 함.

□ 서울장학재단 : 8건

1. 장학재단의 역할은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기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후 어떻게 훌륭하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함.
2. 학생들을 대상으로 골든벨, 퀴즈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서울장학재단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반영해 주기를 바람.
3. 어떤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들을 선발할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선발 기준이 애매함. 특히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선 재능이 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4. 홍보 기념품 목록에 칫솔 살균기, 부직포 가방 등이 있는데, 홍보에 적절한지 의심이 됨.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서 뉴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

5. 장학생 선발 초기 단계부터 선정위원회가 폭넓게 소외계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장학생 선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 선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6.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비상임이사장인데, 비상임 이사장 체제로는 책임있는 경영이 어려우므로,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 필요.
7. SNS 채널 홍보가 활발하지 못한데, 홍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더 많은 사람이 장학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담직원을 두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해볼 것.
8. 일부 장학사업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8건

1. 청년, 중년, 장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세대별로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세대별 평생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야 함.
2. 50플러스 재단 통폐합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진행할 것.
3. 시민대학의 참여 인원이 너무 적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면 수요는 많아진다고 생각함. 몇몇 사람들만 참여하는 시민대학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음.
4.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가 많음. 그런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자치구에서 또 만들어 운영하면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하길 바람.
5. 좋은 프로그램과 홍보를 잘하면 수요는 많을 것임. 연령별 맞춤형 홍보 강화 필요.
6. 낮시간 대 제공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며, 직업교육 등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방식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양하고,

야간교육 강화에 노력할 것.

7. 50플러스재단은 그동안 인생 이모작을 위한 일자리 교육과의 연계 뿐 아니라, 장년층의 경험과 능력 등의 자원을 지역사회와의 접목을 통해 환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많은 성과를 보임. 단지 장년층의 교육이 일부 유사, 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예산이나 사업, 직원의 수에서 규모가 큰 50플러스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이라면 더욱 이치에 맞지 않음. 무리한 합병은 오히려 유사, 중복 사업들을 양산하거나 인위적인 사업의 조정으로 양 기관 종사 직원들의 일자리만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음.
8. 평생교육 경비지원 사업의 경우 장학금 사업으로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서울시 장학재단의 사업과 일부 중복됨.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장학재단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장학재단의 한계가 장학금 편중성이라면 장학재단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당 사업도 장학재단이 받아 장학재단의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 기 타(자료요구 등) …… 95건

□ 비상기획관 : 8건

1. 민방위 대피소가 정말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민방위 대피소 점검을 실질화하여 보고할 것.
2. 2022년 하반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보고할 것.
3. 2022년 제4차 안보정책자문단 회의개최 결과 보고 및 참석자 명단.
4. 우수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에 관한 자료 : 재향군인회 평가 관련 평가 기준, 평가채점표, 점수표 현황, 점수 사유 구체적 내용.
5. 2022년 제4차 안보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결과 보고
6. 민방위대피시설 전체시설의 정비가능 계획 제출
7. 을지연습을 비롯한 전액 시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수발 문서 제출 요망)
8. 감염병 위기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관련 2022년 교육 자료 개선 내용 또는 교육 자료(대설, 지진, 해일 등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자연재해 대응 교육 구분 요망)

□ 민생사법경찰단 : 3건

1. 교육 진행 절차 관련 자료 및 최근 3년간 직원별 과정별 교육 이수 기간.
2. 세출예산 월별 집행내역(2022. 1월 ~ 11월 현재).
3. 월별 급량비, 관외출장 건수 및 금액.

□ 행정국 : 12건

1. 서울혁신파크 특정감사 조치 결과.
2. 공익활동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3.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지.
4.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홍보 자료 (보도자료 배포 내용 등).
5. 주민자치회 자치구 시행 현황 자료.
6. 국가유가보조금 지원, 자치경찰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도개선 등 시도지사협의회 제안문건인지 되돌아보고 고민 필요.

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 외부전문기관 종합성과보고서.
8. 민간위탁사업 관련 수탁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침서, 없을 경우 2021년, 2022년 수탁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서(excel 파일, 하드카피 제출).
9. 수탁기관에 사업비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근거, 사례.
10. 직원동행프로젝트(조직문화TF)에서 논의 중인 다면평가 등 개선방안 중간 보고 자료.
11. 임기제 공무원 관련 시장 방침(다면평가 결과 재계약 등 적용 관련 1년 유예 내용 포함).
12.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차이 내용 포함된 다면평가 방침.

□ 재무국 : 18건

1.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예산안 첨부서류 상 공유재산 관련 서류.
2. 최근 10년간 계약심사 예산절감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이 유찰된 현황.
3. 마을세무사 상담해결 건수 관련 자료.
4. 2020년 세무조사 추징액 대비 취소된 금액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람
5.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지적함. 직원 채용리스트에 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이 동일한 날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료가 부정확함. 이러한 자료로 행감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제출된 행감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현격하게 떨어짐. 수정된 자료 제출 바람.
6. 지방세연구원의 연봉 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이기에 비공개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자료이기에 이름은 제외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람.
7. 지방세연구원 외부강의 시간 및 외부강의 허가기준 자료.
8.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계획에 따른 진행내용 제출 자료.
9. 지방세연구원 수입처리계정 사본 자료.
10.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사항 및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 향후계획 자료.
11. 은닉재산센터 운영 관련 언론사 기사 배포현황.

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취소되거나 지연된 사업현황.
13. 최근 3년간 팀장, 주무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
14. 2022년 10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업체(7개) 현황(업체명, 주소, 담당, 계약사업 등).
15. 세수추계자문회의 설치근거 방침서, 금번 위촉근거 및 회의록, 법적근거에 기반한 운영 방안.
16.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17.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시 노력 사항 자료.
18.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 사항 자료.

□ 평생교육국 : 15건

1. 보고서를 살펴보면, 원주, 영광, 군산에서만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표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 보고할 것.
2.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관련 참여 지자체 산지센터 선정(업체명, 선정과정, 계약기간 포함) 자료.
3. 도농상생 공공급식 농산물 부적합 식재료 조치결과.
4. 청소년 쉼터 현황.
5.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개요(구조, 현황, 예산현황) 자료.
6. 서울런 관련(업무보고 15p) 직업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내용.
7. 서울형 교육플랫폼 학술용역 최종결과보고서(서울형 교육플랫폼 서비스 전략수립).
8.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비스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학술용역) 제안평가 심사자료.
9. 서울런 전문가 자문 관련 자문위원 명단 및 자문내용.
10. 서울런 추진 전 소득차이가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의 근거가 된 연구, 논문 등 참고자료 일체.
11. 서울형플랫폼 사전협의(7.21) 조건부 추진 통보, k-에듀플랫폼 연계통합 검

토와 관련된 교육부와의 수발신 문서 및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자료.

12. 서울런 교재 지급 관련 개요, 근거(조례, 법률 등).
13. 헌법재판소 판시 관련 평생교육 개념 해석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
14. 2021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15. 서울런 행안부 사전협의 내용 및 수발문서 일체.

□ 인재개발원 : 4건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교육운영 실적 p.117 표와 p.270 표의 내용이 상이함으로 확인하여 제출 요망.
2. 비대면 교육 출석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수강태도, 이석 및 수강포기 등 관리자료 포함) 자료.
3. 인재개발원 사업별 월별 집행 현황 자료.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채용 진행 상황.

□ 감사위원회 : 5건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관련 안전감찰 제도 변경 내용(제도 개요, 감찰 권한·기능 등)
2. 용역 계약 시 위원회에서 어떤 공고를 냈고, 어떤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계약 입찰 심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3. TBS에 대한 감사결과의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바람. 교통방송이 공정성을 가지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질책할 것.
4. 오세훈 시장 주요 시책사업 파악 현황, 점검한 내용, 점검 계획 제출 및 보고.
5. 스마트밴드·서울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파악 및 제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5건

1. 고충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진 내용.
2.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차이점 정리.
3. 감사 결과 후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 내역.

4. 감사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단 활용 방안.
5. 옴부즈만의 권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시민들의 숫자와 재판 진행 결과에 관한 자료.
6. 고충민원, 시민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절반 이하인데, 월별 집행률 현황 제출바람.
7. 국제옴부즈만 예산 관련, 교류 및 견학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8. 홍보 추진 관련,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및 홍보 계획이 아닌지?
9. 결산감사를 받은 후 옴부즈만위원회는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관행에 대해 개선하라는 시정권고를 들었음. 이에 옴부즈만위원회는 적극 시정하겠음이라고 답했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매겨져 있음. 어떻게 시정한 것인지 자료 제출 바람.
1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원들의 경력과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
11. 고충민원, 직권감사, 민원배심 등 업무가 다른 부서들과 중복되는지 확인.
12. 질의에 대한 부정확한 답변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답변 시 신중을 기할 것(위원장 채용 관련 절차 발언 수정 관련).
13. 공공사업 감시평가 올해 중점감시 120개 사업 목록과 사업별 추진현황.
14. 2023년도 중점감시(120개) 사업 목록 및 목록이 아직 없을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파악하고 있는 시 중점사업·역점사업 현황 및 내용.
15. 업무보고 상 '공공사업감시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 구체적 사업목표, 진행상황, 예상효과 등 자세한 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 4건

1. 자치경찰교육 현황 자료.
2.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자료.
3.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관련 자료.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육자료, 공통 프로그램, 강의자료, 홍보물 등 제출.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4건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 바람.
2. 그 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실적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보고 바람.

3. 봉사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한 자료도 제출할 것.
4. 2018-2019 홍보물 제작 관련 외부업체 의뢰 내역.

□ 서울장학재단 : 4건

1. 장학사업 만족도 조사 항목 자료.
2.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장학생 선정기준
3. 장학사업별 지원인원/선발인원/경쟁률
4. 2022년 지원 예정인 장학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3건

1. 동네배움터 사업 예산 12억(시비)에 대해 자치구별 지원 예산 현황, 참여자 수 현황(자치구별) 자료 제출.
2. 진흥원이 제공하는 야간교육(야간대학, 야간학습 관련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야간학습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심으로 제출).
3. 동네 배움터 운영사업 관련 성과관리 방안 연구 및 결과에 따른 중장기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관련 두 개 연구자료.